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마약류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서울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2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68”을 “365”로 하고, 일반직 계 “367”을 “3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7”을 “35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16”을 “4,9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16”을 “4,9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51”을 “4,538”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세관 1개 과	10명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u>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u>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u>2</u> <u>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u> ----- ----- <u>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u>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8</u>	<u>365</u>	-3
•	•	•	
•	•	•	
일반직 계	<u>367</u>	<u>364</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57</u>	<u>354</u>	-3
•	•	•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916</u>	<u>4,903</u>	-13
일반직 계	<u>4,916</u>	<u>4,903</u>	-1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51</u>	<u>4,538</u>	-1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